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수익사업 및 성과평가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업무오류 및 비능률적인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방법

가. 감사대상 : 전 부서

나. 감사방법 : 서면·현장 감사실시

3. 감사범위 : 2020년 ~ 2022년 8월까지 추진한 업무

4. 감사중점

가. 수익사업 추진의 적정성

나.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적정여부

다.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여부

라. 업무 수행시 법령·사규 준수여부 및 불합리한 관행 유무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가. 감사기간 : 2022. 9. 26. ~ 11. 8. (기간중 28일)

나.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비고
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시정	계	주의	계	회수	
16	3	2	1	1	4	4	1	2	2	-	-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	<p>■ 본사 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p> <p>본사 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공사시 사전에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무협조를 받았어야 하나, 주차장 요금 수입 처리부서와는 시설물 교체 사업이기에 관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신규 도입한 주차관제 시스템과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당초 공사 완료일보다 40여 일이 더 소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및 임대업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음</p> <p>또한, 공사중 주차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였음</p> <p>그 결과, 월정액 이용자로부터 공사 기간 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과 주차장 관리 및 통제권 행사 미흡을 이유로 부과한 주차요금 반환 요청 민원 제기되어 수입 처리부서에서 사장님 방침을 받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사 기간 동안 불편 및 무상 이용자 대비 형평성 등을 고려 1월분(2022년 7월) 주차요금의 50% 감면함으로써 3,666천원 공사 수익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본사 주차장 업무를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요구하며, 관련자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함</p>	경고 주의 (신분)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2	<p>■ 역구내 상가 및 토지 등 임대 관리 소홀</p> <p>AA팀에서는 역구내 상가 공실 8개소에 대하여 임대입찰 공고 및 유찰 이후 재공고를 하는 등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였음에도 7개월에서 17개월간 해당 상가에 대해 조치가 없었고, 토지 임대업무 추진 시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계속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만료 후 59일에서 217일 경과 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임대시설물(역구내 상가,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역구내 상가 및 토지 등 임대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요구하며, 관련자에게 신분상 “주의”조치를 요구함</p>	경고 주의 (신분)
3	<p>■ 광고물 관련 사규 정비</p> <p>「광고물 관리내규」는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 내규」 제19조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기로 한 조문에 따라 제정한 규정이며, 공사 「사규관리 내규」에 따라, 내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또다시 내규로 정함이 맞지 않으므로 「사규관리 내규」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두 내규에서 ‘광고물’, ‘광고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야 관련 구문의 정비가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사규관리내규」에 따라, 상충되어 운영 중인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p>	개선
4	<p>■ 공사 재산 관리·처분 관련 연체료의 합리적 요율 적용</p> <p>공사 「재산관리규정」 및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의 연체료의 연체요율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연체요율에 비해 우리공사 연체요율이 연체기간별 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 <p>이에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의 연체요율을 마련하시기 바람</p>	권고

인적오류 연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5	<p>■ 광고마케팅 수주자 및 참여업체에 대한 합리적 통제절차 마련</p> <p>공사에서는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제20조에 따라 광고 마케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포상 뿐만 아니라 내부경영 평가, 역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부서별로도 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있고,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와 마케팅 수주가 이루어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주자 및 참여업체에 대한 업무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는 없는 실정임</p> <p>【조치요구 사항】</p> <p>광고마케팅 인센티브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광고마케팅 참여시 광고마케팅 수주자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검증 등 합리적 통제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p>	권고
6	<p>■ 업적평정 입력 인적오류 방지 방안 마련</p> <p>우리 공사에서는 내부경영평가 결과의 인사연계로 실질적인 성과중심 조직운동을 위하여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업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음</p> <p>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평가 결과는 직원 개인의 업적평정점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되고 있으며, 평가제외자로 등록된 직원은 평정업무 담당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6조의2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적평정점을 수동으로 수정 입력하고 있음</p> <p>평가제외자의 업적평정점을 DD팀 평정업무 담당자 혼자 입력하고 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담당자의 실수로 업적평정점이 잘못 입력되면 직원 근무평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담당자 입력 후 검증 절차를 통한 인적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직원 종합평정계획에 평정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업적평정점 입력에 대한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p>	권고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7	<p>■ 내부경영평가 지표성격평가 대상부서 조정</p> <p>지표성격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외부평가위원 선정, 평가실시, 평가결과보고까지 내부평가주관팀인 BB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지표성격평가 시행 이후 거의 매년 평가주관팀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하고 있음.</p> <p>이에 지표성격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항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주관팀인 BB팀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량평가로 변경하여 평가를 받는게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지표성격평가 주관부서인 BB팀과 협의하여 지표성격평가 대상부서를 적정하게 조정하시기 바람</p>	통보
8	<p>■ 연구사업 참여 연구원 활동내역 확인방안 마련</p> <p>CC팀에서는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참여연구원의 연구기여도,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원 등급에 따라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p> <p>그런데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수당을 지급받은 연구원 중에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의 연구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활동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는 연구원도 일부 존재하였음</p> <p>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급을 위하여 연구기여도 산출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며,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참여연구원별 연구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의 작성이 필요하며, 연구노트 작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체지침 마련이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합리적인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참여연구원 연구활동 실적 확인을 위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연구노트 작성·관리를 위한 자체관리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람</p>	통보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9	<p>■ ○○선 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업무처리 부적정</p> <p>CC팀에서는 先 기술력 습득으로 광주2호선 개통에 대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광주지역 인재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선 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수주하였으며, 관제인력 12명을 사업에 투입하여 ○○선 개통 후 3년간 관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p> <p>① 사업참여 적정성 검토 부적정</p> <p>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는 사업참여가 결정되기전에 실시하여야 하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6.15.)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20.8월에서야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 참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p> <p>사업참여 적정성 검토시 ○○선 경전철 사업은 개통 후 3년간 관제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자가 투입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공사내 관제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 중 원격지 근무 가능 인원 파악 및 관제자격자 투입에 따른 관제자격자 양성계획 등 인력선발에 대한 대책등을 포함하여 사업 참여 적정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누락함</p> <p>② 관제인력 투입계획 협의 소홀</p> <p>○○선 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운영계약서」 제13조 핵심인력 13.1(핵심인력의 유지) 나)항 및 13.2(교체)에 따라 관제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경전철)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p> <p>CC팀에서는 공사의 사정으로 관제인력 중 일부 인원의 근무개월수를 분할하면서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계약자(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22. 11. 3.부터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계약자와 관제사 교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함</p> <p>③ 교체예정 무경력 관제사 대책 마련</p> <p>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계약자는 ○○선 개통초기 광주도시철도 경력자(현직 관제사)를 투입하여 시스템 안정을 추구하고자 광주도시철도 관제사의 관제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승인된 「운영계약」에 신림선 개통 후 3년간 광주도시철도공사 경력관제사(12명)를 투입하여 개통초기 장애대응 과정의 시행착오와 운영미숙을 방지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음</p> <p>그런데 공사 관제인력 투입 계획상 '23. 6월, 9월 교체 예정인 4명 중 3</p>	경고 통보

연예 연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명은 관제경력이 없는 직원으로 조속히 관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와 관제사 교체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선 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요구함</p> <p>관제인력 교체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 협의는 물론 관제경력관리를 통한 교체예정자 확보방안 등 신림선 관제인력 투입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 하시기 바람</p>	
10	<p>■ ○○선 FF소 근무직원 인사상 처우 관리 소홀</p> <p>CC팀에서는 ‘○○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2차례 선발 공모(2차, 4차) 시 근무평정 소관팀과 협의하면서 결정된 바 없는 ‘근무평정 우대/인사가점 부여’를 인사상 처우 방안에 포함해 공고문을 작성하여 근무직원을 모집하였고, 서울 FF소 현지 근무일 이후 DD팀에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직원에게 인사가점을 소급적용하게 하는 등 ○○선 FF소 근무직원의 인사상 처우 관리를 소홀히 함</p> <p>【조치요구 사항】</p> <p>○○선 근무직원 인사상 처우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함.</p>	주의
11	<p>■ ○○선 관제처 운영계획 미수립</p> <p>현재 ○○선 관제처 조직은 서울시에서 승인된 「운영계획」과 다르게 관제행정(통상) 2명중 1명이 공사 전력분야 직원이 맡고 있었으며, 관제사 유고시 대체근무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관제로 운영하고 있음.</p> <p>○○선 근무 직원 선발시 통합관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운전분야, 전력분야 직원만 선발하였기에 통합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제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운전분야, 전력분야로 선발된 직원들은 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하였기에 비전문분야 관제시스템 취급시 사고 위험이 높음</p> <p>이러한 중대한 관제처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사 「직제규정 시</p>	주의 통보

연예 연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행내규」 [별표 3] 분장사무표에 따라 FF소 업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CC팀 및 *****처장에 보고하여 계약관련, 안전관련 문제점등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어야 하나, FF소에서는 통합관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구두 보고 후 통합관제를 운영하고 있음</p> <p>이에 현재는 권한이 없는 관제사가 시스템을 취급하고 있으며, 추후 사고 발생시 사고책임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관제 운영에 대한 내부방침 수립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선 관제처 운영계획을 미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함</p> <p>타분야 교육계획을 포함한 관제처 운영방안을 CC팀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람</p>	
12	<p>■ ○○선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소홀</p> <p>○○선 경전철 관제업무 수행 중 관제사 오취급으로 발생한 열차 퇴행 운전과 관련, 관리운영계약자(로****)가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관제사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경력관제사와 합동근무 등 대책을 회신함</p> <p>중점관리대상자는 관리책임자가 월 1회 이상 면담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 시 해제하여야 함</p> <p>하지만, 관리운영계약자에게 해당 관제사에 대한 대책을 회신하고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거나 합동근무를 통한 사고사례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음</p> <p>【조치요구 사항】</p> <p>해당 관제사에 대한 중점관리자 지정, 합동근무 계획 등 전반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p>	시정

연예 내역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3	<p>■ ○○선 FF소 근무직원 대체근무 해소방안 마련</p> <p>공사 「취업규칙」 제10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및 제11조(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는 직원의 근무시간외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공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사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자는 연장·휴가근로시간+50%의 가산시간을 1일(8시간) 단위 적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p> <p>○○선 경전철 관제처 근무계획상 관제사 1~2인 유고시 관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관제처장(FF소장)이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음</p> <p>이에, FF소장의 경우 ○○선 도시철도 관제처의 업무총괄자로서 대체인력 부족에 따른 관제사 유고시 지원근무와 개통 초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대체 휴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적치된 보상휴가 시간이 상당하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함</p> <p>【조치요구 사항】</p> <p>DD팀, EE팀과 협의하여 적치된 보상휴가에 대한 적절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p>	권고
14	<p>■ 계약 상대 대표자 확인 미흡</p> <p>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p> <p>그런데 AA팀에서는 연장 계약시 계약상대 대표자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변경 전의 대표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부정확한 정보로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p> <p>감사기간 내(2022.10.20.)에 변경된 대표자명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조치완료함</p> <p>【조치요구 사항】</p> <p>현지시정 완료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함</p>	현지시정